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大韓醫療氣功學會(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한의학 및 의료기공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료기공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공기술의 수신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공의 교류 및 수련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의료기공학회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친동하는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받은 자로 하며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2. 정회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
3. 준회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년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주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비회원에 비해 우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자격상실 및 회복)

1. 회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체납회비를 불입하고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 문 : 약간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명예회장 : 약간명
4. 회 장 : 1 명
5. 수석부회장 : 1 명
6. 부 회 장 : 3 명
7. 이 사 : 15 명 내외
8. 감 사 : 2 명

제 10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술 기획 총무 편집 홍보 교육 전산 보험 국제 연수 무임소 등의 일들을 배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시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 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인을 받는다.

제 13 조 (임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의 주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정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있으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회원 3분의 10이상 또는 이사회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5. 총회 소집 공고는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 의결 및 보고)

1. 총회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 의결 사항)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낸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 사항

제 1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매 2개월마다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 20 조 (제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매년 학회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21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보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1)

1. 본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5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사항

1. 제 2장 5조 4항 부회장 1인을 부회장 3인으로 개정함.(1997.1)
2. 제 2장 5조 5항 운영위원 8명 내외를 10명 내외로 제정함(1997.1)

3. 제4장 12조 2항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회장이 소집 한다를 4월로 개정함.(1997.1)
4. 제 5장 16조 1항 임회비로만 명시되었던 것을 임회비 2만원으로 개정함.(1997.1)
5. 제 5장 16조 2항 년 회비 및 부담금이라 명시되었던 것을 년 회비 3만원 및 부담금으로 개정함.(1997.1)
6. 제1장 1조 “기공의학분과회”에서 “의료기공분과회”로 개정함.(1999.1)
7. 제 5장 16조 1항 임회비2만원에서 임회비 10만원으로 개정함.(1999.1)
8. 제 5장 16조 2항 년 회비 3만원 및 부담금에서 매년 학회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로 개정 함.(1999.1)
9. 제 2장 5조 “자문위원:약간명”과 “수석부회장:1인”을 추가 개정함.(2000.1)
10. 제 2장 5조 “운영위원:10명내외”를 “이사:15인 내외”로 개정함.(2000.1)
12. 제 2장 5조 8항과 제 4장 15조 1항에서 간사를 삭제 개정함.(2000.1)
11. 제 2장 6조에 이사는 학술, 기획, 총무, 편집, 홍보, 교육, 전산, 보험, 국제, 연수, 무임소 등의 일을 배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개정함.(2000.1)
12. 제 4장 15조 1항, 2항, 3항의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 개정함.(2000.1)
13. 제 1장 총칙과 제2장 회원장에서 새로운 조목의 추가로 인해 제1장에서 제5항까지 각 장의 조항을 개정함. 개정내용 별표1참조 (2003.2)

* 별표 1

대한의료기공학회 정관 개정 사항(2003.2)

수정전	수정후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의료기공분과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u>“대한의료기공학회(이하 본회라 한다)”</u> 라 칭한다. 영문으로 <u>“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u> 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u>필요에 따라</u>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 회는 한의학의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u>한의학 및 의료기 공의</u>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2. 정회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3. 준회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p>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u>자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u>2. 정회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u>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u>3. 준회원 : 대한 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u>자로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자.</u>
	<p>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 (회원의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2.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3.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4.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비회원에 비해 우대 받을 권리 <u>를 가진다.</u> <p>제8조 (자격상실 및 회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회원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 제납회비를 불입하고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5, 6, 7, 8, 9조	제 9, 10, 11, 12, 13조
제6조 (임원의 의무) 5. 간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삭제
제10, 11, 12, 13, 14, 15조	제 14, 15, 16, 17, 18, 19조
제12조 (총회의 소집)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4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u>1월중</u> 회장이 소집한다.
제16, 17, 18조	제20, 21, 22조
제16조 (제정) 1. 입회비 10만원	제 20 조 (제정) 1. 입회비

大韓醫療氣功學會

논문 규정

목차

- 大韓醫療氣功學會誌 논문편집 및 심사 규정
-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원고 투고 요령
- 논문작성법

2003년 7월



大韓醫療氣功學會

大韓醫療氣功學會誌 논문편집 및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가.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大韓醫療氣功學會誌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 순서, 발행예정일,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나.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5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大韓醫療氣功學會장이 위촉하되 최소 2명은 각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의료기공의 영역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2. 심사규정

가. 심사위원 선정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나. 심사기준 및 절차

- (1) 大韓醫療氣功學會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2) 심사는 논문 주제 확정 10점, 자료수집 및 방법 10점, 자료 분석 또는 결과 토의 10점, 문헌고찰 10점, 결론도출 10점, 확실성 6점, 독창성 6점, 객관성 6점, 공평성 6점, 치밀성 6점, 정확성 5점, 윤리성 5점, 검증성 5점, 용이성 5점 등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각

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재가"로 판정한다.

-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구분하고, 심사 위원의 심사결과 2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한다.
-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 (5)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7) 심사위원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8)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회지 발행 규정

- 가. 학회지 발행은 매년 1~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학회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나. 학회지 발행 예정일은 게제논문수가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원고 투고 요령

1. 일반 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학회지 발표 논문을 참고하여,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가.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한의학 및 의료기공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나.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라.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마.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大韓醫療氣功學會가 소유한다.

아. 원고의 접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접수 기간 내에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한다.

2. 원고 투고 요령

- 가. 투고원고는 인쇄본 1부 한글 3.0 이상의 파일이 담긴 디스켓 1장으로 한다.
- 나. 모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 글자체는 세명조, 없을 경우에는 신명조로 하되 Style 및 모든 글자형태(위첨자, 아래첨자, 진하게, 밑줄, 이탤릭체 등)을 일체 설정하지 않는다. (이름, 제목, 본문 모두 포함)
- 다. 글자체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위첨자, 아래첨자, 진하게 밑줄, 이탤릭체 등) 인쇄본 원고에 붉은색으로 밑줄표시를 하여야 하며 File에서는 일반 문자 형태로 둔다. (각주번호의 경우도 표시할 것)
- 라. 논문제목, 발표자명, 영문제목, 발표자 영문표기, 영문초록, 본문 등의 순서는 기존의 학회지 발표 논문을 참고하여 염수하여야 한다.
- 마. 게제자의 소속을 국문의 경우는 *를 사용하여 각주의 양식을 따라 하단에 표기되도록 한다.
- 바. 모든 영문 표기는 표준 영문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사. 중간점(·)은 ^F10을 하여 전각기호 일반에 나오는 것으로 한다.
- 아. 모든 논문은 한글 및 영문 key word를 첨부한다. 용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 : 기공, 정경, 기경, Gigong, Regular meridian, Extra meridian 등)

- 자. Numbering에 있어서 다음 순서를 따른다. (I II - 1.2. - 1)2) - (1)(2) - ①② - 가나)
- 차. 모든 문단은 들여 쓰기 등의 조정을 일체 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잘 못은 문단 앞에 스페이스를 넣어 처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편집 시 일일이 교정을 보아야 하므로 아주 힘들다.)
- 카. Table은 가능한 도표 기능을 이용해 작성한다.
- 타. Fig. 등 그래픽으로 작성된 것이 삽입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파일과 같이 그래픽 파일도 제출한다.
- 파.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석은 각주로 하도록 한다.(미주 허용 안함)
- 하. 각주는 저자 : 서적명, 지역, 출판사며, 발행년도, 쪽수의 순으로 기록 한다.
- 갸. 논문의 페이지 수는 상기방식을 적용하여 20~30 페이지 내외가 일반 적이다.

논문작성법

1.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하며(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본문은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가.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 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나.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다. 초록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2)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 (3)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 (4)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의 사용을 권장하며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라.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

(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 (1)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 (4)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 (가)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h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esagan-tang(Qingfeixiegan-tang)
 - (나)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않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 (5) 항목구분 :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가)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나)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 I, II, III, A, B, C, 1, 2, 3, a, b, c

마. 그림·표

(1)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 ‡. .

(2) 그림(Figure)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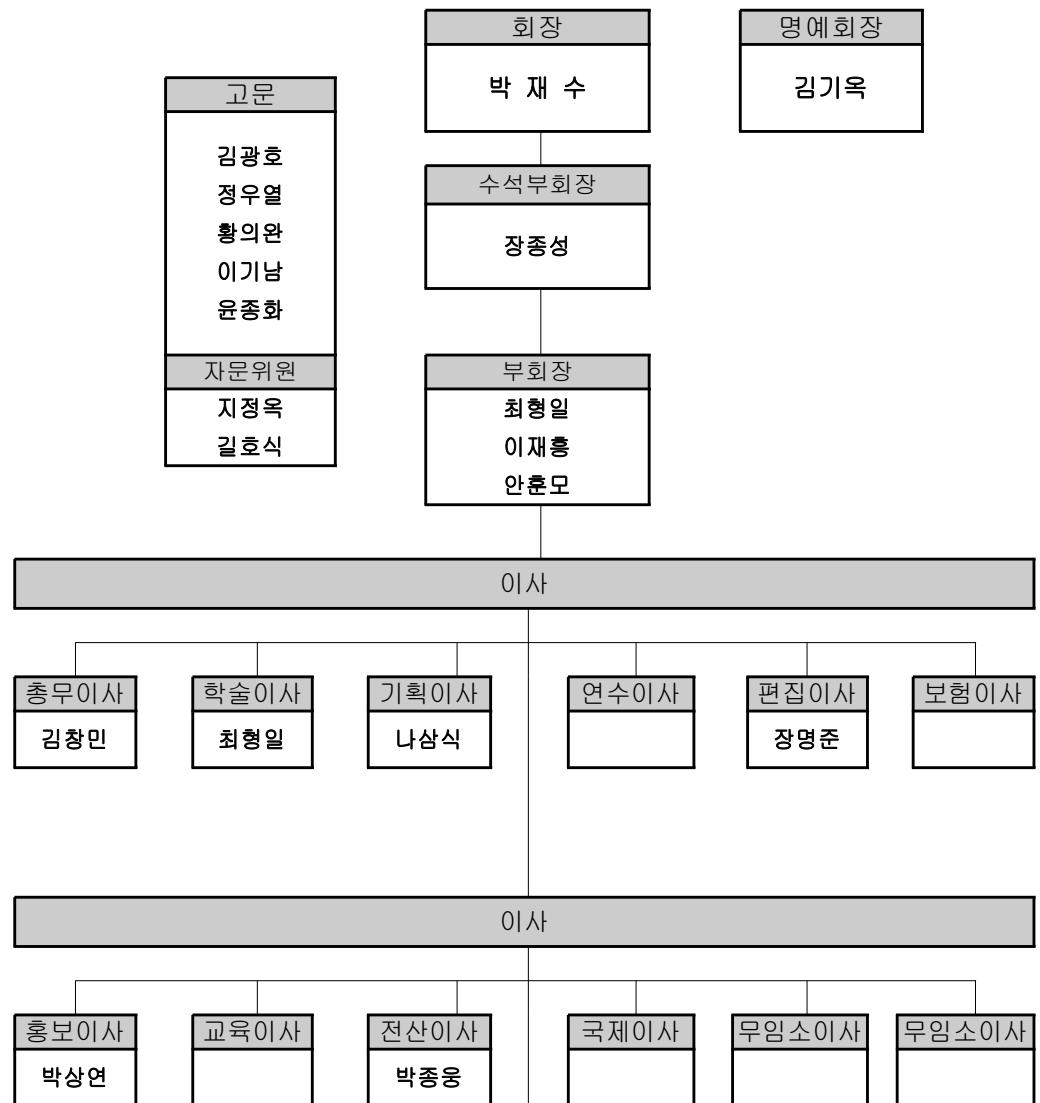
(3)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바.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국문) 임형호, 이종수, 김성수, 신현대. 오령산이 비만유도 백서의 간과 부고환주위의 지방조직, 혈청지질 및 요중 Hormone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8;8(2):16-39.
- (영문) Thomas D, Cullum D, Siahamis G, Langlois S.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scan and Myelography in Low Back Pain. British Journal of Rheumatology. 1990;29:268-73.
-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국문) 대한비만학회. 임상비만학. 서울:고려의학. 1995:203-4.
- (영문)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6.
-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국문) 배종호. 동양본체론 서설:한국동양철학회편.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84:10-1.
- (영문)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2060-81.
- (4)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 : <http://www.cdc.gov/ncidod/EID/eid.htm>

大韓醫療氣功學會 기구조직 및 임원



ISSN 1229 - 6198

第 8 卷 第 1 號 Vol.8, No.1 2005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05. 1. 15. 印刷

2005. 1. 19. 發行

發行人 박재수

編輯委員 이기남

윤종화

길호식

이재홍

안훈모

學術理事 최형일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인쇄 : 금동사 (02)2275-9875

본부 :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1023-1번지

TEL : (02)854-7582
